

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

밑술 또는 술덧 제조장의 시설기준(제7조제2항 관련)

구분	시설기준
1. 제조장시설의 면적	가. 창고: 25㎡ 이상 나. 원료처리실: 20㎡ 이상 다. 제국[국(麴)을 만드는 곳]실: 20㎡ 이상 라. 당화실(糖化室): 20㎡ 이상 마. 배양실: 30㎡ 이상 바. 포장실: 20㎡ 이상 사. 저온저장실: 10㎡ 이상 아. 시험실: 30㎡ 이상 자. 무균실: 9㎡ 이상 차. 사무실: 20㎡ 이상
2. 제조장에 갖추어야 할 기계·기구	가. 증자기(蒸煮機: 찌거나 삶는 기기): 200 ℓ 용 1대 나. 당화조(糖化槽): 300 ℓ 용 1대 다. 가압여과기: 1개 라. 배양탱크: 300 ℓ 용 3대 마. 컴프레셔(공기압축기): 1개